■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 <신설 2019. 6. 18.>

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

신청자	성명 또는 단체명		대표자 ※ 개인은 미기재
	유형 [ ]국가 [ ]지방자치단체 [ ]공공기관·공공법인 [ ] 그 외 법인 [ ]비법인단체(개인회사 포함) [ ]그 외 개인 [ ]기타		
	주소 (전화번호:) (휴대전화번호: ※ 개인만 기재)		
	소유자와의 관계 [ ]소유자 본인 [ ]관리기관(국·공유재산만 해당)		
업 무 담당자 ※ 개인의 경우 미기재	소속부서		성명
	전화(휴대전화번호)		전자우편주소
신청 대상 자료	명칭 (고유모델번호:)		
	소재지(보관 장소)		
	관리 위탁 ※ 관리를 위탁한 경우만 기재	성명 또는 단체명	
		주소 (전화번호:)	

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

신청자 제출서류	1.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2. 신청대상 자료의 사진 및 설계도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3. 신청대상 자료의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건축물대장(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 2. 토지(임야) 대장(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 3. 건물등기사항증명서(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 4. 토지등기사항증명서(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 및 검토	→	심사	→	결과 통보
신청자		과학기술정보통신부		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전문가		과학기술정보통신부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